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425 호

2001 년 12 월 1 일 토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35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 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1. 12. 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63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감사) 제1항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공포(2001.5.22)시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당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전됨에 따라 본 조례중 행정사무감사실 시와 관련된 조항의 일부자구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 *****

